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913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정 이유

○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맞는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고자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신 국민운동과 연계하고, 도시발전 속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고 있는 우리시 시민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함양하고자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을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 안산시 소재 각 분야의 기관 ·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약자를 배려하며, 서로 공존·협력하는 지역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의 추진 및 운동본부 지원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와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다.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라.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실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관리 사항 규정 (안 제4조)

마.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 지원한 사업비의 집행 결산 및 감독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정 조례 안 : 붙 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 **관련사업 계획서**

○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구성 및 운영계획

☐ **예산 수반사항 : 201백만원**

○ 사무국 설치 : 51백만원(사무실 시설공사 및 자산 취득비)

○ 사무국 운영 : 연 85백만원(사무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 경상사업비(민간이전) : 연 65백만원(위원회별 3대 핵심과제 추진)

☐ **사전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 예고 : 2009.10.20 ~ 2009.11. 9(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 해당 없음**

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정주의식과 애향심 함양을 통하여 기본이 지켜지고, 약자를 배려하며, 서로 공존·협력하는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 고향 안산 만들기"란 우리 고장 안산을 정감 있고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이 안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애향 운동을 말한다.
2.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고 이를 전개하기 위하여 안산시 소재 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시장은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중심의 시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운동본부 조직구성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성과 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9월 10일까지 지원이 필요한 익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산서 등) ① 운동본부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운동본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자치행정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민 화 식
	담당·팀장 직위·성명	민간협력담당 장 경 열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계 철 (행정 3094)

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13

제안년월일 : 2009. 12. 24.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조례안의 제명과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한 조문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시민의 참여, 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결산보고,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조례 규정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내 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함.

○ 목적 규정 일부를 합리적으로 수정함.(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내용 일부를 합리적으로 수정함.(안 제2조)

○ 시민의 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함.(안 제4조)

○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 결산보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 " 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을 "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을 실천하고 운동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동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이라 함은 안산을 정감있고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시민이 안산에 대하여 사랑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애향운동을 말한다.
2."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조직"이라 함은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구성된 시민과 기관·단체의 협의체(이하 "운동조직"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민의 참여 등) ①시민은 안산을 사랑하고 내 고향 안산만들기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운동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운동조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운동조직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운동조직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안산만들기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결산보고 등) 운동 조직은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운동조직이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

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운동조직이 기한 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정주의식과 애향심 함양을 통하여 기본이 지켜지고, 약자를 배려하며, 서로 공존·협력하는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을 실천하고 운동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 고향 안산 만들기"란 우리 고장 안산을 정감있고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이 안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애향 운동을 말한다. 2.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고 이를 전개하기 위하여 안산시 소재 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2조 (정의) ----------. 1."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이라 함은 안산을 정감있고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시민의 안산에 대하여 사랑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애향 운동을 말한다. 2."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조직"이라 함은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구성된 시민과 기관·단체의 협의체(이하 "운동조직"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시장은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3조(시민의 참여 등) ①시민은 안산을 사랑하고 내 고향 안산만들기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원 안	수 정 안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중심의 시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운동본부 조직구성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성과 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운동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9월 10일까지 지원이 필요한 익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동조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결산서 등) ① 운동본부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운동조직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한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필요시 운동본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동조직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안산만들기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원 안	수 정 안
< 신 설 >	제6조 (결산보고 등) 운영 조직은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7조 (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운영조직이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운영조직이 기한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 ----------.